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. 4. 28 선고 2021가단516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정운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완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경재, 이연주

변 론 종 결 2022. 3. 31.

판 결 선 고 2022. 4. 2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18. 6. 22.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. 6. 25. 접수 제225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본적인 사실관계

가. 'D'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E은 2017. 11. 15.경 C으로부터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을 공사대금 3억 8,000만 원에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한 다음,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.

나. C은 2018. 5. 16.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다. 원고의 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, C이 2018. 12. 6.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, 원고는 2019. 2. 11.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[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7288(본소), 2019가단758(반소)].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에 E으로부터 E이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48,565,000원을 양도받아 2020. 8. 13. 위 법원으로부터 'C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 48,565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받았다.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, 2021. 5. 20.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[전주지방법원 2020나7579(본소), 2020나7586(반소)].

라. 한편, C은 2018. 6. 22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단독 1순위 우선수익자를 F조합(이하 'F'이라고 한다)으로 하고, 우선수익권 한도를 312,000,000원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'이 사건 신탁계약'이라고 한다), 2018. 6. 25.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의 1, 2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과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원고는,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F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

신탁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F은 악의이므로,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으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의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F이 선의라는 취지로 다룬다.

나. 판단

1)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,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(신탁법 제8조 제1항), 사해신탁에 있어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2) 앞서 제시한 증거와 을 제2호증, 을 제3호증의 1, 2,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설령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고,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, F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가) F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, C이 F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.

나) F은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345,998,900원으로 산정되자, 2018. 6. 25. C에게 위 감정평가액의 약 70%에 해당하는 2억 4,000만 원을 대출하고,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다. 이 과정에서 F은 금융기관으로서 C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고, 위 대출액도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.

다)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G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4,100만 원의

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, 피고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지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. 그 밖에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압류가압류나 근저당권과 같은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등기가 없었고, F로서는 C에 대한 위 신용정보 조회와 위 등기부 이외에 달리 원고의 양수금 채권을 포함하여 C의 재정상태나 채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.

라) F은 위와 같이 C에게 2억 4,000만 원을 대출할 당시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과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제출받았다. 또한 F은 E으로부터 ‘공사대금 일체를 수령하였다’는 내용의 영수증과 ‘유치권 및 시공권 포기각서’를 제출받았다{원고는, 위 영수증은 E이 실제로는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, C의 대출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, F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제4호증의 1 내지 3,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F이 위 대출 당시 위 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}.

마) 금융기관인 F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에게 대출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.

3)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F이 선의인 이상,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강호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. 전라북도 군산시 대 975㎡

2. 전라북도 군산시

[도로명주소] 전라북도 군산시

철근콘크리트구조

(철근)콘크리트지붕 2층

단독주택

1층 92.6㎡

2층 86.63㎡

- 끝 -

